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판매업체 이용약정서

본인은 e커머스마켓에서 재화 및 용역(이하 "재화 등"이라 함)을 판매함에 따라 취득한 정산금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팩토링 서비스(이하 "팩토링 서비스"라 함)를 이용함에 있어, 귀행과 _____(이하 "중심업체") 및 PG사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 및 「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기본약관」(이하 "팩토링 기본 약관"이라 함)에 기초하여 이 약정(이하 "본 약정"이라 함)을 체결합니다.

제1조(용어의 정의)

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팩토링 기본 약관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
제2조(업무절차)

판매업체는 아래 업무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·제출하기로 합니다.

- ① 판매업체는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매체 및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서 명으로 본 약정을 체결합니다.
- ② 판매업체는 중심업체가 은행에 통지한 대상 정산채권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에 팩토링 신청을 합니다.
- ③ 은행은 중심업체의 승낙에 근거하여 제9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팩토링 이자를 선취 후 판매업체 약 정계좌에 대금을 입금합니다.
- ④ 은행과 중심업체간 합의한 특정 조건의 판매업체는 은행 영업점에서 본 약정을 체결하거나 팩토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본 약정의 내용 중 성질상 적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조항들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.

제3조(팩토링 신청 및 실행)

- ① 판매업체는 본 약정 체결 이후 대상 정산채권에 한하여 팩토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판매업체는 대상 정산채권의 정산일 직전 은행 영업일까지로 팩토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팩토링 실행시 정산채권 정산일(정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도래하는 첫 은행영업일)까지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입금합니다.
- ④ 은행은 팩토링 신청 및 팩토링 실행의 결과를 판매업체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제4조(자동선정산 신청)

- ① 판매업체는 개별 팩토링 실행요청 없이, 중심업체가 은행에 통지한 정산채권을 자동으로 팩토링 실행하는 자동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자동선정산 서비스는 판매업체의 별도 신청에 따라 적용되며, 자동선정산 서비스의 이용신청 및 해지는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.

제5조(판매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 부존재)

은행은 팩토링 실행 이후 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.

제6조(팩토링 서비스 대상 판매업체의 범위)

① 은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1. 중심업체와 거래 또는 거래 예정인 판매업체
- 2.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판매업체
- 3. 중심업체가 은행에 팩토링 대상 업체로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한 판매업체
- 4. 중심업체로부터 정산대금을 받는 계좌가 제9조의 입금계좌와 동일한 판매업체
-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중심업체는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(제한) 판매업체를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별도 안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서비스 이용약정 및 팩토링 실행 제한사유)

- ① 은행은 팩토링 기본약관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약정을 제한하거나 팩토링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판매업체가 제6조의 요건을 갖추고 팩토링 기본약관 제6조에서 정하는 팩토링 실행 제한사유가 없거나 해소된 경우 판매업체가 신청한 팩토링을 실행하기로 합니다.

제8조(팩토링 신청 취소)

- ① 은행이 팩토링 실행을 완료하여 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판매업체는 정산채권의 환매신청(팩토링 실행취소)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은행이 팩토링 실행을 완료하여 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기 전에 판매업체는 정산채권의 환매 신청(팩토링 실행취소)을 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팩토링 실행이 취소된 경우 은행은 즉시 중심업체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.

제9조(입금계좌 지정)

팩토링 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의 하나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합니다.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

제10조(팩토링 이자율 및 이자)

1	팩토링	이자율은	은행과	중심업체간	협약에	따라	아래	이자율을	적용하기로	하며,	팩토링	실행에	ᄄ
	른 팩토	링 이자는	- 판매업	체가 부담합	니다.								

□ 기준금리 () + 가산금리 () %	
□ 기타 ()	

- ② 제1항의 팩토링 이자는 은행과 중심업체간 약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인은 그 변경된 금리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이자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된 금리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④ 이자 계산은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, 이자는 팩토링 실행시 정산일 까지 계산하여 일괄 선취합니다. 단, 정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도래하는 첫 은행영업일까지 계산하여 선취합니다.

제11조(정보제공 동의)

- ① 판매업체는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중심업체에게 판매업체의 사업자정보 및 약정정보, 팩토링 실행 내역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② 중심업체가 정산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PG사에 일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, 은행이 PG사에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제12조(약정해지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정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지됩니다.
 - 1. 판매업체가 은행에 본 약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
 - 2. 판매업체와 중심업체간 마켓 이용계약이 해지(마켓 이용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)되어, 중심업체가 그 사실을 은행에 통지한 경우
 - 3. 판매업체가 팩토링 신청을 한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상 신규로 팩토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
 - 4. 중심업체 이용약정서가 해지,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는 경우
- ② 판매업체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, 전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해지신청을 합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, 은행은 즉시 중심업체에 대해 본 약정에 따른 채권양도가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-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약정 해지가 예상되는 경우, 은행은 사전에 판매업체에게 본 약정의 해지 예정 사실을 안내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사유로 중심업체 이용약정이 해지되는 경우, 은행은 본 약정의 해지 사실을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약정기한 및 효력)

- ① 본 약정의 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.
- ② 본 약정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, 판매업체의 팩토링채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팩토링채권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본 약정의 효력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14조(준거법)

- ① 은행과 판매업체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본 약정, 팩토링 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팩토링 기본약관의 순서로 하며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, 『여신거래기본약관』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.

제15조(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합의)

본 약정의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, 본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.

년 월 일

본인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본 약정을 체결합니다.	본인	(인)
---	----	-----

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